

## 【 14 】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6. 4.
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 1. 개정이유

2006.1.1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,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제정 예정인 「양주시 기금운영 통합심의위원회조례」를 적용하며, 농기계 임대기종과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임대농기계기종을 확대하여 "축산 및 과수분야 농기계"를 신설 (안 제2조 제2호)
- 임대대상자를 확대하여 "축협"을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협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함. (안 제9조)
- 기금의 용도에서 "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"는 제11조제1조에 임차인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"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"를 신설함.(안 제21조)
- 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」 제정 예정으로 "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"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,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.(안 제22조)

##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“제3호”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축산 및 과수분야 농기계.

제3조제1항중 지역농협 다음에 “축협”을 신설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삭제한다.

제9조중 “재임대할수 없다”를 “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”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단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협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 임대가 가능하다.”

제20조제1항중 “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호. “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”를 삭제하고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①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23조 및 제 2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임대기종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&lt; 신설 &gt;</li> <li>3.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</li> </ol>	<p>제2조(임대기종) 현행과 같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<u>축산 및 과수분야 농기계</u></li> <li>3. -----</li> </ol>
<p>제3조(임대대상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생략</li> <li>②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이용조직이라 함은 지역농협, &lt; 삽입&gt;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작목반 등을 말한다.</li> </ol>	<p>제3조(임대대상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현행과 같음</li> <li>② -----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축협, -----</p>
<p>제4조(임대절차 및 선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생략</li> <li>② 시장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주시농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 한다.</li> </ol>	<p>제4조(임대절차 및 선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현행과 같음</li> <li>② -----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 삭 제 &gt;</p>
<p>제9조(양도 및 대여금지)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<u>재임대할 수 없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서 신설)</p>	<p>제9조(양도 및 대여금지)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 단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협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임대가 가능하다</p>

## 제20조(기금의 운용관리)

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 
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
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.

### ② 생략

## 제21조(기금의 용도) 생략

1. 생략
2.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  
가입비

### 3.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제비용

### 3. < 신설 >

## 제22조(기금운영심의)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심의회에서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 제20조(기금의 운용관리)

① -----  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-----  
-----

### ② 현행과 같음

## 제21조(기금의 용도) 현행과 같음

1. 현행과 같음
2. \_\_\_\_\_ < 삭제 >  
-----

2. -----  
-----
3.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  
관창고 설치

## 제22조(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)①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## 제23조 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

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

## 제23조 < 삭제 >

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

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 
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 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 
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 
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사항

제26조(결산 및 보고) 시장은 출납폐쇄후  
8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
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되, 작성된  
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  
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 < 삭제 >